

# 독일에서의 은행법에 대한 개관

김 은 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독일연방은행법

## III. 감독법

1. 일반의 감독법
2. 특별감독법

## IV. 자본시장법

1. 유가증권거래과 증권거래소에 관련한 법
2. 인수법
3. 투자법
4. 자본투자표준절차법

## I. 들어가는 말

보통 은행법이라 함은 금융기관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실재적인 법을 말한다. 이는 은행법의 제도적인 개념이다.

실체적으로 은행법이란 통화조달, 화폐폐기, 통화량, 화폐보관 등에 관한 법이다. 은행법은 은행에 관련한 직접적인 법규 외에도 감독법 및 자본시장법 등도 광의의 개념의 은행법으로 독일에서 보고 있다.

유가증권은 광의의 개념에서 금전이다. 유가증권법과 증권법도 또한 화폐조달, 통화량과 화폐보관 등을 다루게 된다. 화폐관련법상 통화조달, 화폐폐기는 통화량과 같이 조절되는 것이다. 실제적인 은행법에 관한 개념은 은행감독법은 포괄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는 은행감독법도 은행법의 범주 내에서 이해하는 편이다. 그만큼 독일에서의 은행법의 범주는 상당히 넓다. 통화와 관련한 모든 법과 이에 덧붙인 일반감독법 및 특수감독법, 그리고 자본시장법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이러한 특성에는 유럽법의 영향도 한몫했다. 최근에 독일에서 은행관계법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EU-은행법조정지침(EG-Bankrechtskoordinierungsrichtlinie, 2006/48/EC, Abl. L 177 vom 30.6.2006, S.1)과 자본적합성에 관한 지침(Kapitaladäquanzrichtlinie, 2006/49/EC, Abl. 177 vom 30.6.2006, S. 201)의 국내법으로의 전환에서 왔다. 투명성지침전환법(Transparenzrichtlinie-Umsetzungsgesetz)은 특히 유가증권행위법의 개정을 끌어내었다. 자본시장법(Kapitalmarktrecht)에서의 의미있는 개정작업은 자본투자가표준절차법(Kapitalanlegermusterverfahrensgesetz)을 만들어 내었다. 여기에 덧붙여 연방금융행정의 신조직을 위한 법률과 재금융등록부형성을 위한 법률이 그에 대한 특별규정을 은행업법(Kreditwesengesetz: KW)로 수용되어졌다. 담보증권법으로 인하여 지금까지의 시행령이 포기되었고 새로운 담보증권-현금가치규정(Pfandbriefe-Barwertverordnung: PfandBarwertV, 을 통하여 대체되어야만 했다. EU양도지침의 전환으로 인하여 실제로 유가증권의 취득 및 인수에 관한 법(Wertpapiererwerbs- und Übernahmegesetz: WpÜG) 및 새로운 시행령이 도출되었다. 은행법에 관한 법규범은 다음과 같다.

## II. 독일연방은행법

독일의 기본법 제88조 1문에 따라 연방은 통화은행 및 발권은행으로서 연방은행을 설립하였다. 연방은행의 구체적인 설립근거는 독일연방은행법(Gesetz über die Deutsche Bundesbank)이다. 화폐 및 통화와 관련한 정책에 관한 권한은 1999년 초 이후 유럽중앙은행(Europäische Zentralbank: EZB)과 유럽중앙은행기구(Europäisches System der Zentralbanken: ESZB)에 양도되었다. 독일연방은행은 정부의 지시로부터 독립되고, 그 어떤 감독하에 놓이지도 않는다. 지배적인 견해에 따르면 의회의 감독에서도 제외되는 것으로 한다. 실제적으로도 연방은행에 대하

여 유럽법에서 보장하는 자치<sup>1)</sup>가 정부의 경제정책에 조력할 의무를 통하여 다소 제한된다. 연방은행법에 설립 및 연방은행의 의무, 기관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연방은행의 집행 및 결정기관은 2002년 4월 30일 이후 8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이다. 그들은 전문성을 가진 자로서 연방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다. 이때 독일정부가 의장과 부의장의 2인을 추천하고, 나머지 4인은 연방정부와의 합의하에 추천한다. 연방은행의 장이 유럽중앙은행위원회의 구성원 자격을 가진다.<sup>2)</sup> 이 위원회 등에서의 그의 의결권행사는 연방은행이사회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연방은행의 기능은 1999년 1월 1일의 유럽경제통화공동체의 세 번째 단계를 개시함과 동시에 매우 약화되었다. 특히 화폐정책에 대한 것은 유럽중앙은행위원회에 귀속되어 있는데 제3의 국가에 대한 통화정책도 유럽연합 공동체에서 정해진다. 연방은행의 통화보유고에 관련한 부분도 역시 이 유럽중앙은행에 그 권한이 양도되었는데, 유럽중앙은행기구의 과제에 속하는 업무는 다시금 분산되어 연방은행에서 수행된다. 연방은행은 법으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연방의 국가적 은행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연방금융감독청과 은행기관에 대한 감독을 공조체제의 방식으로 한다.<sup>3)</sup>

### III. 감독법

#### 1. 일반의 감독법

특별히 신뢰성이 취약한 경제영역에서의 행위자로서 은행과 금융서비스기관이 국가적인 감독기구에 지배하에 놓이게 되는데, 여기에서 영업행위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의 유지가 문제가 되는 반면에 동시에 고객, 즉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의 지불불능을 가능한 억제하고 종합경제의 안정을 위해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감독이 신용경제의 기능수행능력을 보장하게 된다. 그러므로 영업자유의 원칙이 이와 같은 금융회사에는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광범위한 경제법적 은행감독은 1934년 은행업법(Kreditwesengesetz: KWG)에서 시작되었다. 이 법은 1931년 세계경제위기에 대한 일종의 반응, 즉 독일 은행의 붕괴과정에서 도출된 것이었다. 1961년까지 몇 차례의 개정이 있었고 1962년 1월 1일 이후로 유효한 금융기관법을 기본골격에서 차용하게 되었다. 1994년 지불능력에 대한 감독이 유

1) EU조약 제108조 및 ESZB 및 EZB 정관 제142조.

2) EU조약 제112조.

3) 금융기관법 제7조.

가증권거래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en Wertpapierhandel: WpHG)을 통하여 시장감독으로 확대해 나갔다.

양쪽의 감독은 2002년 보험감독과 함께 조직상 금융감독청의 산하에 통합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이에 대한 근거법규는 금융서비스감독법(Das Gesetz über die 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gesetz: FinDAG)이다. 금융기관법은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규이고 영업상 특정한 분야에 대하여는 그에 맞는 특별법이 추가적으로 적용되었다. 예컨대 저당증권행위(담보증권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담보증권법(Pfandbriefgesetz)이, 주택은행에 대하여는 주택은행법(Bausparkassengesetz), 그리고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투자법(Investmentgesetz)가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 1) 금융서비스감독법

금융서비스감독법(Das Gesetz über die 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gesetz: FinDAG)은 은행기관에 대한 감독, 보험감독 및 유가증권거래에 대한 감독을 병합하는 데 근거가 되는 법률로 2002년 5월 1일에 금융서비스감독에 대한 연방청(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BaFin), 일명 연방금융감독청이 설치되었다. 연방금융감독청은 은행업법(Das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KWG), 보험감독법(Das Gesetz über Versicherungsaufsicht: VAG) 및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en Wertpapierhandel: WpHG)에 따라 실제적으로 변함없는 감독업무를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금융서비스감독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서만 행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급부청구나 손해배상청구, 특별히 은행의 고객이나 공적 조치나 공무상 직무유기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고 공권력 부당행사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제외된다. 공공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은 관련 기구에 귀속한다. 연방금융감독청과 연방은행으로 구성된 금융시장감독에 관한 포럼은 그들간의 협력관계를 조정하고 연방금융감독청은 자신의 감독하에 있는 기업에게 분담금을 받아 비용 등을 충당하고 있다. 이에 관한 관련규정은 금융서비스감독법 제14조 제2항 및 제16조 제2항, 제3항에 근거하여 입법화된 금융서비스비용규정(Finanzdienstleistungskostenverordnung: FinDAGKostV)<sup>4)</sup>으로 이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4) 본문에서 'OOO-Verordnung'이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은 Regulation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유럽연합의 유럽법상 2차법원 중에 유럽연합회원국과 시민에게 직접 적용되는 규정(규칙 또는 명령이라고 표현하는 의견도 있다)을 의미한다.

## 2) 은행업법

### (1) 개요

은행업법(Das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KWG)은 기업상의 개별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금융서비스기구 및 신용서비스기구의 영업행위에 대한 법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동법은 1980년 이래로 유럽연합의 지침의 결과 실제 생성되거나 수정된 것이다. 1976년 은행업법의 개정법은 무엇보다도 거대 금융기관의 양도 등에 제한을 가하였으며, 자영업을 주로 하는 상인을 통한 은행의 운영관리를 금지하였고 감독의 권한을 금융기구에 의한 위기의 경우로 확대하였다. 예금자 보호를 위한 자유로운 기구를 두되 이 설치에 관한 것 자체는 필수적 요건으로 하였다. 독일의 사은행, 협동조합은행 및 저축은행의 자립기관은 비은행권의 예금이 기구의 파산의 경우 해체가 되어 사실상 완전히 사라진다.

은행은 고객에게 비상외의 경우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 외에 고객의 예금에 대한 법적인 최소보호정치는 예금보호 및 예금자손해배상보상법(Einlagensicherung- und Anlegerentschädigungsgesetz: EAEG)을 통하여 하고 있다. 1984년 은행업법의 개정법은 금융기구단체의 은행감독으로 집중되어졌다. 1992년 광범위한 개정은 은행감독에 집중한 개념을 유럽연합에 확대하여 조화를 이루어 나갔고, 이를 위하여 이전의 법을 확대시켰다. 이러한 과정에서 1997년 은행업법 개정법은 금융기관을 위한 영업소소재지 원칙에 기초가 되었다. 이에 따라 다른 회원국에서 허용되고 감독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독일법에 따라서는 다시금 인허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른 회원국의 법에 따라 설립되어 독일에 지점의 형태로, 또는 서비스의 제공의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에 독일법에 따르는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유럽패스(Europa-pass)라고 하여 한 회원국에서 허용하면 이것이 나머지 회원국에서도 별도의 허가신청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1994년 은행업법의 개정법은 은행감독법상 건전성을 확대하였다. 1997년 은행업법 개정법에서는 은행감독에 금융서비스업자(Finanzdienstleister)를 포함시켰고, 이에 유럽연합의 자본적합성에 관한 지침(Kapitaladäquanzrichtlinie)이 예정한 바와 같이 시장위험 규정이 필수적으로 덧붙여졌다. 더욱이 건전성 규정이 개정이 되었다. 실제로 제 6번째 은행업법 개정법은 은행제도에 대한 연방감독청의 기본원칙, 즉 기본원칙 I과 1998년 기본원칙 II의 변화를 끌어내었다.

2002 금융감독법은 당시에 감독이 진행되고 있는 분야에서 연방은행과 연방금융감독청의 협력관계를 보다 명백하게 규정하였다. 더불어 2002 금융시장육성법

(FinanzmarktförderungsG 2002)은 은행업법을 개정하고 보충하였다. 그리고 전자화폐지침(E-Geld-Richtlinie)<sup>5)</sup>을 고려하여 전자화폐의 지출과 그에 대한 관리로서 전자화폐행위의 은행업무의 요건을 개정하고 전자화폐뿐만 아니라 전자화폐제도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였다.

2006년 11월 17일자의 제7 은행법 개정법은 유럽연합의 은행법조정지침과 자본 적합성에 관한 지침에 대한 개정지침(Änderungsrichtlinie zur EG-Bankrechtskoordinierungsrichtlinie und zur Kapitaladäquanzrichtlinie)을 변환한 것이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은행법의 현대화가 이루어졌다. 양 지침은 은행감독법에 관한 바젤위원회를 통하여 발전된 새로운 국제 감독기준(Internationale Konvergenz der Eigenkapitalmessung und der Eigenkapitalanforderungen-Basel II)에 적용하는 것에 관련된 것이고, Basel II와 같이 3주체제에 기원한다. 즉 최저자본 요구(Mindestkapitalanforderungen), 감독관청을 통한 자기자본금에 대한 조사(Überprüfung der Eigenkapitalausstattung durch Aufsichtsbehörden) 및 기관의 공시의무(Offenlegungspflichten der Institute)가 이에 해당한다. 새로운 은행업법 개정은 은행업법 제10조 이하에서 무엇보다도 기관의 자기자본금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였고 이를 확대하였다. 부분적으로 신설된 규정인 자기자본에 대한 부가규정은 금융신탁과 그 외에 업무에 있어서 어음거래소와 은행이 감수할 위험을 더 잘 대처하게 된다. 그 외의 개정은 연방금융감독청의 감독법상의 권한과 관련이 되는 것이다. 일종의 행정규정으로서 제정된 기본원칙 I과 II에서 교체한 지불능력규정과 유동자산규정으로부터 바젤규정이 분리되었다.

## (2) 은행업법에서의 감독법상 실제적인 요소와 관련 법규<sup>6)</sup>

### ① 감독의 범위

유가증권발행업무와 전자화폐업무로 그 정의를 확대하게 된 피감기관인 금융기관 외에 실제적으로 자기나 타인의 계산으로 하게 되는 유가증권과 외환거래를 하게 되거나 재산관리인으로서 업무를 행하는 금융서비스기관에 확대된다. 즉 금융기관으로서 그리고 금융서비스기관으로서의 두 영역은 기관(Institute)이라는 개념하에서 정리가 된다. 그러므로 은행업법은 독일의 일반은행원칙(Universalbankprinzip)에 상응하는 금융기관의 개념에 따른다. 유가증권과 파생상품과 같은 것을 취급하는 증권회사와 같은 일반은행은 경쟁상 균형관계에 있는 이해관계

5) 2000/46/EG, Abl. L 275 vom 18.9. 2000, S. 39.

6) 이하에서는 은행업법에 따라 감독법상의 감독을 하는 과정, 내용, 절차 등과 관련하여 실제적인 요소가 무엇인지와 그에 관련된 법규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기술한 것이다.

에서 금융제도상 업무에 대한 특별규정을 필수로 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은행법 제10조 제1항 9문에서 구체화하고 있는 시장의 위험을 부기하는 것과 상장사(Hadelsbuchinstitute)의 여신초과의 경우에 적용된다. 감독에 부분적으로 관련되는 금융사가 세 번째 그룹을 구성한다. 혼합된 금융지주회사가 아니며 그 회사가 주로 금융지주회사이고, 적어도 투자금융기관, 전자화폐기관, 유가증권 거래사 또는 자본투자회사를 자회사를 위하여 가지는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사로 간주된다. 은행법에는 그 외 많은 정의규정이 있는데, 예컨대 출자금융기관, 유가증권거래사, 유가증권거래은행, 종합금융사, 다자적 발전은행, 제3국가로부터 승인인 유가증권거래사, 유가증권거래를 적게 하고 있는 비상장사 등이다.

## ② 영업의 개시

은행영업을 하려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연방금융감독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혹여 법적인 거절사유가 존재한다면 불허가 된다. 무엇보다도 불충분한 영업수단, 인적 불확실성, 부족한 전문적 적합성 및 두 번째 상임업무집행자의 부족 등이 이에 속한다. 물론 그러한 거절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허가를 요청하는 법적청구권이 생기게 된다.

③ 조직 및 질서규정: 종합금융사-지불능력규정(Finanzkonglomerate-Solvabilitäts-Verordnung), 지불능력에 관한 규정(Solvabilitätsverordnung und Liquiditätsverordnung)과 자금세탁법(Geldwäschegesetz)

자기자본과 기관의 지불능력에 대한 규정이 은행법법의 핵심이다. 은행, 금융감독기관 그리고 기관그룹은 적당한 책임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기자본은 중심자본(Kernkapital)과 추가자본(Ergänzungskapital)으로 나뉘는데, 중심자본은 실제적으로 준비금(Rücklage)이나 입금된 영업자본 또는 급여분을 포함하여 자기자본을 의미하는 것이다. 추가자본은 장기적으로 처리해도 되는 자금과 채권자의 채권행사를 대비한 특정에비비가 덧붙여진 것이다. 그 다음 순위의 자본으로는 특정의 위험의 종류와 중심자본에 연관되는 것을 상장사가 자신의 시장위험, 외환관련 위험과 원료품과 관련한 위험 등을 부가하여 할 것을 통하여 정할 수 있다. 자기자본과 중요도에 따른 위험자산 사이의 관계가 은행감독의 황금률로서 기존의 기본원칙 I 제2조 제1항에 따라 일일 8%에 미달해서는 안 됐던 반면에, 변환된 Basel II 기본원칙은 자기자본의 부기를 수정하였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대부수혜자의 평가가 각종 위험의 조사를 위한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

신용의 자기자본의 부기를 정하게 된 것이다. 또한 조작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자기자본으로 부기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은행업법 제1조 제20항에 따른 종합금융사는 총계로 적정 자기자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적정 자기자본금에 대한 더 상세한 규정은 은행업법 제10b조 제1항의 수권에 따라 종합금융사-지불능력 규정(Finanzkonglomerate-Solvabilitäts-Verordnung)<sup>7)</sup>과 관련이 된다.

은행의 지불능력은 차변의 장단기 투자와 대차대조표의 대변과의 관계를 통하여 확정된다. 구체적인 것은 독일연방금융청으로부터 독일연방은행의 합의하에 수립된 금융기관의 지불능력과 자기자본에 대한 기본원칙(Grundsätzen über die Eigenmittel und die Liquidität der Institute)에 기록되었었는데, 이는 이후 지불능력에 관한 규정(Solvabilitätsverordnung; SolvV und Liquiditätsverordnung; LiqV Nr.7c)으로 교체되었다.

금융기관은 은행업법 제24조에 따라 계좌번호와 기탁번호에 대한 정보와 성명, 은행업무관련한 인적 보고내용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를 연방금융감독청은 불법적인 은행업무와 금융서비스의 관점에서 은행업법과 자금세탁법(Geldwäschegesetz)<sup>8)</sup>에 따른 감독법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정보데이터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 투명성 내지 건전성 및 위험에 대한 충분한 예비조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은 특정의 조직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지로업무(Girogeschäft) 또는 금융지불업무를 하는 금융기관은 업무 위임자에 대한 완벽하고 적합한 내용을 포함하는 데이터를 사용하여야만 한다.

④ 신고, 보고 및 통지의무: 초과여신규정(Großkredit- und Millionenkreditverordnung) 및 월별정기증명서규정(Monatsausweisverordnung)

금융기관의 법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감독은 금융기관과 금융그룹이 중대한 업무사고에 대하여 관련기관에 고발을 하는 것을 통해 하게 된다. 이러한 것들은 주로 은행업법 제13조 이하에서 언급하고 있는 위험성이 있는 대부, 예컨대 초과여신, 기관대부에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초과여신규정(Großkredit- und Millionenkreditverordnung)이 제한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더욱이 은행감독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특정의 인적, 조직 또는 금융상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의 결산에 대한 과정은 일명 월정기증명서에 근거하여 전개되는

7) FkSolV Nr.7d.

8) GwG Nr. 9.



데 이 월정기증명서는 독일연방은행의 매달결산통계의 형식으로 가능하게 되고, 독일연방은행으로부터 은행감독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절차상의 구체적인 것은 월별정기증명서규정(Monatsausweisverordnun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업년도 경과 후 3개월 내에 작성되는 연말결산은 연방금융감독청에 지체없이 송부되어야 한다. 은행업법 제26a조에 따른 자기자본에 대한 정보 등과 관련되는 것을 공시할 의무도 또한 금융기관에 있다.

#### ⑤ 결산과 의무심사: 상법(Handelsgesetzbuch)

모든 금융기관의 연말결산은 공인회계사나 협동조합 심사협회, 저축은행과 지로협회의 심사소 등을 통하여 심사된다. 이는 소규모의 금융서비스기관에 대하여는 제외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상법 제340k조에 따른 것이다. 심사범위는 은행제도 전반에 확대된 것이다. 기관의 경제적인 관계와 감독법상 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한다.

현저한 법규위반 또는 기관의 존립에 관련한 위험 등이 있을 경우에는 연방금융감독청에 고지하여야 한다. 상법 제340i조와 제315조에 따라 연말정산과 큰체른에 대한 결과 등은 공개하여야 하고, 대규모기관에 대하여는 연방공보를 통하여 알려져야 한다.

#### 3) 종합금융사에 대한 특별규정: 은행법상 특별규정과 종합금융사-지불능력규정(Finanzkonglomerate-Solvabilitäts-Verordnung)

종합금융사지침(Finanzkonglomeraterichtlinie)<sup>9)</sup>의 전환으로 은행업법에 종합금융사에 관한 특별감독규정(제51a-c조, 제53d조)이 들어왔다. 특별감독을 통하여 은행, 보험 그리고 은행서비스, 투자서비스 및 보험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다른 금융기관 사이의 증가하는 관계로부터 생기는 위험을 부담할 필요가 있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종합금융사가 지불능력, 위험집적, 그룹내부의 합병, 내부의 위험관리, 신뢰성, 업무추진에 있어서 전문적인 적합성 등과 관련하여 그룹차원에서 감독이 되었다. 그러나 금융영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결산총액 중에 차지하는 지분이 그룹차원의 결산총액의 40% 이상의 최소한계치를 넘어섰다면 추가적인 감독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은행업법 제51c조 제2항). 충분한 자기자본에 대한 부기를 확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것은 종합금융사-지불능력규정(Finanzkonglomerate-Solvabilitäts-Verordnung)에 규정되어 있다.

9) 2002/87/EG, ABl. L 35 vom 11.2.2003, S.1.

또한 모기업이 제3의 국가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로서, 금융기관, 보험사 및 유가증권사가 유럽공동체 내에 본점소재지를 가진다면 연방금융감독청의 감독에서는 제외된다.

#### 4) 예금자보호 및 투자자보호법

예금자보호 및 투자자보호법(Einlagensicherungs- und Anlegerentschädigungsgesetz: EAEG, Nr. 8)은 고객의 예금에 대한 법적인 최소한의 보장을 규정하고 동일한 범위 내에서 금융서비스기관의 고객을 자신의 청구로 인하여 유가증권업무와 관련하여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는 유럽연합지침을 독일의 국내법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예금자와 투자자는 금융기관의 지불불능의 경우 그 기관에 대해 가지는 청구권의 90%를 받게 되고 2만 유로의 한도 내에서 보상기구(Entschädigungseinrichtung)로부터 보상을 받게 된다. 연방금융감독청은 손해보상건에 대한 확정을 속히 해야 한다. 보상기구는 그가 속해 있는 기관에서 낸 기금으로 운영된다.

법에 의하여 예정된 보상기구 외에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를 위한 금융경제의 임의기구가 존재한다. 보호범위와 예외는 은행 약관 20호에 기재되어 있다.

#### 5) 자금세탁법(Geldwäschegesetz)

중대한 범죄행위로부터 취득한 이득의 색출에 대한 법(Gesetz über das Aufspüren von Gewinnen aus schweren Straftaten; Geldwäschegesetz, GG, Nr. 9)은 1993년 10월에 제정된 것으로 이는 합법적인 금전의 순환에서 범죄행위의 결과 획득한 이득의 운반과 2002년 자금세탁방지법(Geldwäschebekämpfungsgesetz) 이래로 국제적인 테러행위의 자금조달을 방지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진 업무관계에 맞춰진 계약을 체결할 때, 15,000유로 또는 그 이상의 가치에서 현금, 유가증권 또는 보석류의 수령의 경우, 금융기관, 금융서비스업자, 재산관리인과 생명보험사를 통하여 필수적인 신원확인 의무(obligatorische Identifizierungspflicht)가 앞서 언급한 목적에 유익한 것이다. 2001년 유럽연합의 자금세탁지침(EG-Geldwäscherichtlinie 2001)의 전환으로 특정의 자유직업이 자금세탁법상의 의무이행집단에 포함되었다.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거나 테러연맹의 자금조달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경우에 금융기관과 관할 감독청은 형사소추관여기관에 통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형법(Strafgesetzbuch: StGB) 제261조, 제129a조).

## 2. 특별감독법

### 1) 담보증권법

담보증권법(Pfandbriefgesetz)는 저당은행법(Hypothekbankgesetz)과 담보증권 및 채권에 관한 법(Gesetz über Pfandbriefe und verwandte Schuldverschreibungen)의 후속으로 나온 법이다. 담보증권법은 대부업무에서 토지담보권을 통한 담보대출을 보장하거나 저당담보증권이나 지방채의 발행을 통하여 자금이 조달이 되는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특별규정을 포함한다. 저당대부(Hypothekarkredite)는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서, 유럽경제협회의의 조약체결국에서, 스위스, 미국, 캐나다 및 일본에서 보장되는 것이고, 담보증권을 통하여 신용대부를 해 주기 위해 재융자를 하는 것이다.

담보증권법은 실제로 담보증권행위의 운용을 위한 허가에 대하여 특별한 전제조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연방금융감독청뿐만 아니라 담보권자의 보호를 통한 감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담보증권업무는 은행업무이고 은행업법 제32조와의 의미하에서 제2조에 따라 연방금융감독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담보증권행위에 대한 감독은 은행업법과 담보증권법에 따라 연방금융감독청이 하게 된다.

담보증권업무와 관련하여 담보권자는 담보증권의 보상, 저당이나 토지채무 등을 통해 보호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보상은 현금가치(Barwert)를 통해 보장된다. 여기에서 현금가치라 함은 미래의 가치액(Werterträgen)에 목적을 둔 계산에 근거하여 산출한 청구권의 가치를 의미한다. 이 경우 현금가치계산의 방법과 관련한 구체적인 것은 담보증권 현금가치규정(Pfandbriefe-Barwertverordnung: PfandBarwertV, Nr. 10a)에서 정하고 있다. 보상가치의 현금가치가 보상하여야 할 채무의 총액을 약 2% 상회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외에도 이와 관련한 규정에는 보상등기규정(Deckungsregisterverordnung; DeckRegV Nr. 10b)과 담보가산출규정(Beleihungswertermittlungsverordnung; BelWertV Nr. 10c)이 있다.

### 2) 주택은행법

주택저축은행법 내지 건축저축은행(Gesetz über Bausparkassen)은 주택은행을 은행업법의 관할하에 놓고 그것을 넘어가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규정을 주택저축은행법에 두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러한 특별한 사항에는 건축자금을 저축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주택관련 저축의 특성이 적시되어 있다. 사적 주택저축은행은 법형식이 주식회사(Aktiengesellschaft)이어야 하

지만 이전에 유한회사(GmbH)로서 운영된 기업이라면 이러한 법형식도 유지할 수 있다. 공법적 주택저축은행에는 주법이 적용된다. 이에 대하여 추가적인 국가적인 감독을 받게 된다. 특별금융기관으로서의 주택저축은행은 중심영업에서 건축관련 저축과 부수적 행위를 하게 된다.

은행업법을 넘어서는 부분에서의 주택저축은행법의 규정은 주택저축은행연대(Bausparkollektiv)의 목적을 위한 입출금자금의 운용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러므로 주택저축예금과 상계급부는 근본적으로 주택예금업무에만 이용될 수 있다.

주택저축은행의 주업무는 건축관련 대부에 관련한 담보설정, 즉 토지저당권 설정과 금전대부 및 원금 및 이자 상환관련 업무이다. 부수적 행위와 투자 대상은 주택저축은행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사전적인 자금조달과 중도 자금조달에서 대부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이다.

담보증권법에서와는 달리 주택저축예금은 특정자산을 형성하지는 아니한다. 이러한 일련의 영업행위를 감독하기 위하여 연방금융감독청은 대표(Vertrauensmann)를 임명하게 된다. 저축은행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연방금융감독청은 은행업법에 따라 수행했던 것과 같은 유사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 담보권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측면에서 주택저축은행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보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주택저축은행채권자 보호를 위한 규정(Verordnung zum Schutz der Gläubiger von Bausparkassen; Bausparkassen-Verordnung, Nr. 11a)을 참조하면 된다. 본 규정에는 주택예금계약에서의 사전 자금조달과 중도자금조달에 대하여, 그리고 영업적인 성격을 띤 건축의 경우에서의 자금조달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IV. 자본시장법

### 1. 유가증권거래과 증권거래소에 관련한 법

#### 1)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법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법(Gesetz über den Wertpapierhandel: WpHG, Nr. 12)은 근원적으로 다수의 EU지침과 관련이 있는데, 특히 유가증권서비스지침(Wertpapierdienstleistungsrichtlinie)<sup>10)</sup>과 내부자지침(Insiderrichtlinie)<sup>11)</sup>이 변경

10) 93/22/EWG, ABl. L 141 vom 11. 6. 1993, S. 27.

11) 89/592/EWG, ABl. L 334 vom 18.11. 1989, S. 30.

된 것이다. 이는 다시 제4 금융시장장려법 2002(4. Finanzmarktförderungsgesetz 2002)를 통해 증대한 자본시장법상 규정으로 확대되었다. 시장남용지침(Marktmisbrauchs-Richtlinie)<sup>12)</sup>이 변환된 투자자보호개선법(Anlegerschutzverbesserungsgesetz)과 EU 유가증권조정위원회의 권고를 통해 생성된 규정을 담고 있는 회계관리법(Bilanzkontrollgesetz)으로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법은 시장조작의 금지, 연말결산과 증권시세가 정해진 기업의 보고서에 관련한 연방금융감독청의 감독권한 등을 규율하고 있다. 투명성지침전환법(Transparenzrichtlinie-Umsetzungsgesetz)은 투명성지침(Transparenzrichtlinie)<sup>13)</sup>의 대부분을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법에 변환하고 이에 따라 실제적인 개정작업이 이루어진 바 있다.

## 2)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Börsengesetz)는 무엇보다도 증권거래가 허가된 시장의 조직과 증권거래에 대한 것을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현재 8개의 유가증권거래소가 전국에 있다. 이 외에도 전자적인 거래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Eurex라고 하고 전국에 퍼져 있다. 증권거래법이 10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대대적인 개정이 있었다, 1975년 개정법을 시작으로 금융시장장려법의 발효로 증권거래 관련한 조직이나 감독규정 등에 상당한 변화가 왔으며, 특히 유럽연합이 성숙되어 감에 따라 국경간의 제한이 철폐되어 이러한 영향이 합법적으로 증권거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여기에 관련된 하부 규정에는 증권거래규정(Börsenordnung)이나 수수료규정(Gebührenordnung) 등이 있다.

## 3) 유가증권안내법

유가증권안내법(Wertpapierprospektgesetz: WpPG, Nr. 14)은 안내지침(Prospektrichtlinie)<sup>14)</sup>이 변환된 것으로 유가증권의 설명서의 발행, 공개 등에 관한 것으로, 이는 유가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된 시장에 공공연히 제공될 유가증권에 관한 내용이나 거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주로 재산 투자형상품의 증권하에 관련된 경우에 증권 종류와 지분 및 그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하여 시장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12) 2003/6/EG, ABl. L 96 vom 12.4. 2003, S. 16.

13) 2004/1009/EG, ABl. L 390 vom 31.12.2004, S. 38ff.

14) 2003/71/EG, ABl. L. 345 vom 31.12.2003, S. 64.

## 2. 인수법

유가증권의 취득 및 인수에 관한 법(Wertpapiererwerbs- und Übernahmegesetz: WpÜG)으로 일명 인수법(Übernahmegesetz)이라고 부르는데, 2001년 12월 20일에 제정되어 2002년 1월 1일자로 발효된 것이다. 증권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주식회사의 인수에 관한 규범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주식의 취득을 위한 공연한 매매나 교환 등과 관련된 것이다. 이 법에서는 목적회사의 주식의 취득을 위한 주식의 공적인 매매 및 교환 등의 제안(Kauf- oder Tauschangebote), 적어도 의결권의 30%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인수제안(Übernahmeangebote)과 의무제안(Pflichtangebote)으로 구분하고 있다.

## 3. 투자법

은행업법의 부속법으로서 투자법(Investmentgesetz; InvestmentG, Nr. 18)은 투자업무를 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법 및 사법상의 규정을 담고 있다. 국외의 투자지분의 공공연한 판매를 허가받은 기업은 자본투자회사(Kapitalanlagegesellschaft), 투자펀드(Investmentsfonds), 투자회사(Investmentgesellschaft) 등으로 불린다. 투자주식회사(Investmentaktiengesellschaft)도 또한 이러한 형태에서 일정한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연방금융감독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런다고 하여 이를 금융기관으로도 금융서비스업자로도 투자법상 자본투자회사로 보지는 않는다. 이와 관련해서는 투자법의 일반규정과 은행법상 상응하는 규정을 적용하는 정도이다.

## 4. 자본투자표준절차법

자본투자표준절차법(Kapitalanleger-Musterverfahrensgesetz: KapMuG, Nr. 19)은 투자자의 민사법상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법이다. 자본투자와 관련하여 다양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하여 청구권에 근거하여, 또는 청구권이 배제가 되는 사실이나 법적 질의 등을 표준절차에 맞추어 규정해 놓은 것이다. 투자자는 이 표준을 통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며 투자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다.